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규정

1991년	2월	12일	제정
1997년	1월	7일	개정
1997년	7월	1일	개정
2002년	3월	8일	개정
2004년	10월	8일	개정
2010년	9월	10일	개정
2010년	10월	8일	개정
2014년	4월	11일	개정
2016년	8월	9일	개정
2016년	10월	5일	개정
2017년	8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과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의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원고작성) ① 논문은 A4용지 1쪽, 2쪽, 4쪽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술발표대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원고양식 및 집필요령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4조(원고의 접수 및 수리) ① 원고접수는 논문발표일 30일 전에 마감한다.

② 원고의 수리여부는 별도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술발표대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저작권) ①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부속규정1(논문심사규정)

1998년 6월 9일 제정

2014년 4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행한다.

제2조(심사위촉 및 방법)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논문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인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모두 '수정게재' 이상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단 2인 중 1인으로부터 '게재불가'가 나왔다면 제3의 심사자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즉 3인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게재' 이상이 나와야만 게재가 가능하다.

②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③ 게재의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도 등을 평가한다.

제4조(판정)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등 네 가지로 한다.

제5조(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및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투고 세부지침

2016년 6월 30일 제정

2016년 10월 2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을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과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할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제출) 논문은 학술발표대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논문의 분량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논문작성지침에 준하여 제출한다.

제3조(심사) ① 제출된 논문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부속규정1’에 준하여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서의 ‘투고가능’ 또는 ‘투고불가능’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투고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발표대회논문집에 게재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 투고한다.

③ ‘투고불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발표대회논문집에만 게재한다.

제4조(재투고) ① ‘투고가능’으로 판단된 논문은 ‘대한건축학회논문규정’ 및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논문작성지침’에 준하여 논문을 재편집하여 투고한다.

② 재투고 시 심사비는 면제된다.

제5조(재심사) 재투고된 논문은 ‘대한건축학회논문집규정’에 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수정 및 게재) 투고자는 반드시 ‘본 논문은 ○○○○년도 학술발표대회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한 논문임’을 명기하고, 대한건축학회 윤리규정 제2장제8조에 의거하여 수정사항을 보완후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회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